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3
----------	------

제출연월일 : 2018. 03.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 나. 자전거주차장 정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 다. 자전거도로의 구분에서 자전거우선도로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3조)
- 라.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한 조문 수정(안 제6조)
- 마.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바.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일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수정(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01월 18일 ~ 02월 07일까지(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관련 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도로관리과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자전거이용자”를 “자전거 이용자”로, “자전거이용여건”을 “자전거 이용 여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건설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건설과 한상용
	팀장 직위·성명	도로건설팀장 박은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방현준 (790-56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u>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u>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u>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 ----- <u>자전거 이용자</u> ----- ----- <u>자전거 이용 여건</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자전거이용시설</u>“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p> <p>2. (생략)</p> <p>3. “<u>자전거주차장</u>”이라 함은 <u>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u></p> <p>4. ~ 8.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 3. (생략)</p>	<p>제3조(자전거 도로의 구분)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4. <u>자전거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u></p>
<p>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법 <u>제5조제2항</u>과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항</p> <p>2. ~ 6. (생략)</p> <p>3.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제5조제3항</u> ----- -----</p> <p>2. ~ 6.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신설></p>	<p><u>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u></p> <p><u>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u></p>
<p>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u>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p>	<p>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u>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u></p>

현행	개정안
	<p><u>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4.28.]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4.28.>]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2조의2에서 이동 <2014.4.28.>]